

#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찬중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17
----------	-----

발의년월일 : 2015년 3월 31일

발 의 자 : 유찬중 의원(1명)

찬 성 자 : 성백진, 김인제, 김태수, 이신혜  
김영한, 우형찬, 최판술, 이복근  
박성숙, 성중기 의원(10명)

## 1. 제안이유

조례의 원활한 이해를 위해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하고자 하는”을 “하려는”으로 하고 “현저히”를 “뚜렷이”로 하며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1회”를 “한 번”로 하며 “허위증빙서류를”을 “허위증명서류”으로 하고 “교부하여야”를 “지급하여야”로 하며 “취하여야”를 “밟아야”로 하고 “매도일자는 잔금납부일자로”를 “매도일은 잔금납부일로”로 하며 “4회”를 “네 번”로 하고 “비치”를 “보관”로 하며 “시정을 요하는”을 “시정할”으로 하고 “5%”를 “5퍼센트”으로 하며 “소요되는”을 “드는”으로 함. (안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20조, 제21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예산조치 :

다. 기 타 :

##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시장은”을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중 “서울특별시장이”를 “시장이”으로 하고 “사용하고자 하는”을 “사용하려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중 “사용하고자 하는”을 “사용하려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중 “현저히”를 “크게”로 한다.

제4조제2항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5조제2항중 “매각하고자 하는”을 “매각하려는”으로 한다.

제5조제3항중 “서울특별시장이”를 “시장이”으로 한다.

제6조중 “매각하고자 하는”을 “매각하려는”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중 “사용하고자 하는”을 “사용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3호중 “사용하고자 하는”을 “사용하려는”으로 한다.

제9조제1항중 “5%를”을 “5퍼센트를”으로 한다.

제9조제2항중 “매각하고자 하는”을 “매각하려는”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요청하고자 하는”을 “요청하려는”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중 “1회”를 “한 번”로 하고 “사용하고자 하는”을 “사용하려는”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중 “허위증빙서류를”을 “허위증명서류”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4호중 “현저하게”를 “뚜렷하게”로 한다.

제13조제2항중 “교부하여야”를 “지급하여야”로 한다.

제13조제3항중 “취하여야”를 “뱉아야”로 한다.

제13조제4항중 “ 교부하는”을 “지급하는”으로 하고 “매도일자는 잔금납부 일자로”를 “매도일은 잔금납부일로”로 한다.

제15조제3호중 “사용하고자 하는”을 “사용하려는”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제1호다목중 “소요되는”을 “드는”으로 한다.

제18조제1호중 “사용하고자 하는”을 “사용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중 “사용하고자 하는”을 “사용하려는”으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중 “4회”를 “네 차례”로 한다.

제21조제1항중 “징수하고자 하는”을 “징수하려는”으로 한다.

제23조 규정명중 “비치”를 “보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중 “비치하여야”를 “보관하여야”로 한다.

제23조제2항중 “1회”를 “한 차례”로 한다

제23조제3항중 “시정을 요하는”을 “시정할”으로 한다.

제24조중 “신탁하고자 하는”을 “신탁하려는”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중 “비치”를 “보관”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매각결정) <u>시장</u>은 사업지구의 환지가 지정된 후 매각이 가능한 체비지는 매각하여야 한다.</p>	<p>제3조(매각결정)<u>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u>은 ----- -----.</p>
<p>제4조(매각방법)</p> <p>① 시장은 체비지를 일반경쟁입찰에 따라 매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p> <p>1. (생략)</p> <p>2. <u>서울특별시장이</u>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u>사용하고자 하는</u> 때</p> <p>3.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설립 부지로 <u>사용하고자 하는</u> 체비지를 해당 법인에게 매각하는 때</p> <p>4.~5. (생략)</p> <p>6. 학교·공장·회사·주택 또는 그 밖에 시설이 점유하고 있거나 그 경내에 위치한 체비지로서 이를 타에 매각하기가 불가능하거나 타에 매각하는 것이 <u>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u> 때</p> <p>② 시장은 상반된 이해관계인 끼리 사실상 또는 소송상 분쟁 중에 있거나 분쟁이 우려되는 체비지 또는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체비지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불구하고 일반경쟁입찰에 <u>의하여</u> 매각하여야 한다.</p>	<p>제4조(매각방법)</p> <p>① ----- ----- -----.</p> <p>1. (현행과 같음)</p> <p>2. <u>시장이</u> ----- ---- <u>사용하려는</u> ----</p> <p>3. ----- ----- ----- <u>사용하려는</u> ----- -----</p> <p>4.~5. (생략)</p> <p>6. ----- ----- ----- ----- <u>크게</u> ----- -----</p> <p>② ----- ----- ----- ----- ----- <u>따라</u> -----.</p>
<p>제5조(매각가격의 결정)</p>	<p>제5조(매각가격의 결정)</p>







<p>에는 매각대금이 완납되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저당권 설정 등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④ 제2항에 따라 매도증서 및 위임장을 교부하는 때에는 매도일자는 잔금납부일자로 하고, 등기 원인일은 계약일로 한다.</p>	<p>----- ----- ----- ----- <u>밟아야</u> -----.</p> <p>④ ----- ----- <u>지급하는</u> ----- <u>매도일은 잔금납부일로</u> ----- -----.</p>
<p>제15조(대부의 대상) 시장은 제3조에 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비지는 대부할 수 있다.</p> <p>1.~2. (생략)</p> <p>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u>사용하고자 하는</u> 체비지</p>	<p>제15조(대부의 대상) ----- ----- ----- -----.</p> <p>1.~2. (현행과 같음)</p> <p>3. ----- ----- <u>사용하려는</u> -----</p>
<p>제16조(대부료의 부과·징수)</p> <p>① (생략)</p> <p>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제1항의 대부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p> <p>1. 전액 면제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p> <p>가.~나. (생략)</p> <p>다.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시키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이전에 <u>소요되는</u> 기간동안 당해 시설과 직접 관련된 체비지를 사용하도록 대부하는 경우</p>	<p>제16조(대부료의 부과·징수)</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 -----</p> <p>가.~나. (현행과 같음)</p> <p>다. ----- ----- <u>드는</u> ----- -----</p>
<p>제18조(대부기간) 대부기간은 체비지를 점유하는 기간으로 하되 점유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p>	<p>제18조(대부기간) ----- ----- ----- -----</p>

<p>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p> <p>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u>사용하고자 하는</u> 때</p> <p>2. 「지방공기업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직접 사업목적에 <u>사용하고자 하는</u> 때</p>	<p>----- ----- -----.</p> <p>1. ----- ----- <u>사용하려는</u> -----</p> <p>2. ----- ----- ----- ----- <u>사용하려는</u> -----</p>
<p>제20조의2(분할납부)</p> <p>①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u>4회</u> 이내의 범위에서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p>	<p>제20조의2(분할납부)</p> <p>① ----- ----- <u>네 번</u> ----- -----.</p>
<p>21조(대부료 등의 징수방법)</p> <p>① 시장은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대부료 또는 변상금을 <u>징수하고자 하는</u> 때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p>	<p>21조(대부료 등의 징수방법)</p> <p>① ----- ----- <u>징수하려는</u> ----- -----.</p>
<p>제23조(관리대장의 비치)</p> <p>① 시장은 대부료 및 변상금의 징수 등에 관한 대장을 <u>비치하여야</u> 한다.</p> <p>② 시장은 매년 <u>1회</u> 이상 체비지에 대한 현장을 조사하여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p> <p>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u>시정을</u> 요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제23조(----- <u>보관</u>)</p> <p>① ----- ----- <u>보관하여야</u> -----.</p> <p>② ----- <u>한 번</u> ----- -----.</p> <p>③ ----- <u>시정할</u> ----- -----.</p>
<p>제24조(체비지의 신탁) 시장은 체비지를 <u>신탁하고자 하는</u> 때에는 「서울특</p>	<p>제24조(체비지의 신탁) ----- ----- <u>신탁하려는</u> -----</p>

<p>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p>	<p>----- -----.</p>
<p>제25조(권한의 위임) ① 시장은 체비지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체비지의 소재지를 관할 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체비지의 관리대장 <u>비치</u> 및 기록 유지, 무단점유 예방, 지장물 철거 등 개별 체비지의 관리</p>	<p>제25조(권한의 위임) ① ----- ----- -----. 1. ----- <u>보관</u> ----- ----- -----</p>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비용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규정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 개정조례안에 대한 각 안들이 “자구수정”임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되지 않음.

4. 작성자

- 서울특별시의원 유 찬 중